

- 2000년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2월 5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9일

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과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- 저지대 침수예방 및 오수관거 설치로 수질오염 방지
-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하수처리장 유입 농도 저하 방지

다. 주요내용

- 하수관거 신설 및 개·보수 소요 사업비 지방채 발행
 - 사업량 : L = 22.6km(신설 - 14km, 개·보수 - 8.6km)
 - 사업비 : 5,094백만원(시비300, 기채4,794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공기업법 제19조, 지방자치법 제11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낙동강 수질개 선과 하수처리 효율제고를 위하여 '97. 10. 8 확정된 하수도사업 지방채발행계획 28,458백만원 중 최종년도 잔여분4,794백만원의 지방채발행은 연리7.83%의 장기저리 환경부 공공자금으로서 원금상환도 양여금70%로 중당되며, 이자도 국고부담5.37%, 지방양여금이 2.303%이고, 나머지0.987%만 시비로 부담하면 되는 비교적 좋은 조건의 융자라 판단되며.
- 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하수관거 22.6km를 신설 및 개량하여 전국 평균68.4%에 못미치는 하수관거 보급율('99년말 58.2%)을 증대하고 지하수오염 예방과 하수처리장 유입수 농도저하를 방지하여(76mg/L → 120mg/L) 낙동강수질을 보호코자 함은 구미시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필요사업이라 사료되나
- 지방채 차입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, 재정상태,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